

형 법 (7 급)

(과목코드 : 132)

2021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과관계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②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고의범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경우에는 결과의 행위에 대한 귀속과 관련하여 객관적 귀속에 대한 평가가 필요 없지만,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할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 ④ 행위자가 야기시킨 위험이 예견하기 어려운 비유형적 인과진행으로 결과에 이른 경우도 행위자가 위험을 야기시킨 이상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2.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이사의 가처분사건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보조금을 집행할 정책에 있는 자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그러한 전용행위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든 丙에게 명중되어 乙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② 자(子)가 부(父)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사실의 착오)에 의하여 절도죄의 형을 면제한다.
- ③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甲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 ④ 甲은 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밤중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공범의 독촉을 받아 자신의 장모 丙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

4.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표준으로 한다.
- ②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되어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
- ③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을 통하여 과실범의 성립범위를 축소시키는 이론이다.
- ④ 과실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이중적 지위설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은 책임요소가 된다고 봄으로써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5. 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서도 벌금을 부과한다.
- ②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등 구성원의 당해 법률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인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④ 1인 회사에 있어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6.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②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대향행위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라도 피교사자가 다른 원인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어도 교사행위로 인하여 그 결의가 강화된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7.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②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게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용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다면 제3자에 대하여서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내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무면허로 행해진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8.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 ②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구법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한국인이 한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에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 지역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제1항의 책임무능력은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하여 판단한다.
- ②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능력 까지도 결여된 자를 말한다.
- ③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심신장애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10. 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되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를 범할 수 없다.
- ② 甲이 위조한 문서 스캔파일을 乙에게 발송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이 이를 출력한 경우, 乙이 위조문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자인 甲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보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갑을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간접정범에 관한 정범설을 취하면서 공범의 정범에 대한 제한적 종속형식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책임 없는 자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도 벌할 수 있고 교사범으로도 벌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피이용자가 도구로서 이용당한 것이 아닌 이상 이용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11. 다음 중 형의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형의 양정을 할 때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경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해야 한다.
- ② 형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 ③ 법률에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 법원은 다른 양형조건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임의적 감경사유만을 심리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2.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행의 착수 시점에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계속할 계획이었던 때에는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종료되어도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치밀한 계획범을 우대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착수미수는 실행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소극적 부작위만으로도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③ 실행미수에 있어서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어도 결과가 발생하면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시점에 결과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믿으면 실행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의한다면 행위자가 애초 6발의 실탄을 준비해 왔는데 첫 발을 쏘아 빗나간 다음 다시 쏠 수 있었음에도 사격을 포기한 때에는 실행미수로 보아야 한다.

13. 다음 중 체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시점에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잠재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지만,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야 감금죄가 성립한다.
- ③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즉시 기수에 이르게 되지만, 감금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자유의 속박이 다소 시간이 계속함을 필요로 한다.
- ④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면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②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 ③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가를 살피기 시작하였더라면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④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단지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더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더라도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15.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②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자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채권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때에도 그러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6.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자가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고백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 ②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군인에 대한 무고의 경우,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도 그것이 지휘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해당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할 직권이 있는 소속 상관에게 도달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가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그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 있으면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17.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② 배임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③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가 경과한 후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을 담보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

18.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직무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내에 있어야 하고 또한 직무행위의 유효요건인 법령에 정한 방식절차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 ③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

19.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서, 관습이나 조리에 의하여서도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② 살인죄와 같은 순수야기범의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에 있어서는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동가치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 ③ 행위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고의 인정을 위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 내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0.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더욱 관련이 있다.
- ②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관습형법은 간접적으로도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21.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공모하고 비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공무원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서 뇌물수수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그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계약체결이 뇌물수수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뇌물수수죄만 성립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 ④ 뇌물수수자가 뇌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었다더라도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중한 결과에 대해 적어도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법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③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정범이 교사·방조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교사·방조자에게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

23.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조한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를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때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다른 공무원을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 공사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 갑이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공무원 을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준공검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이 그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결제한 다음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24. 다음 중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발생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바로 기수에 이르지만, 단지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집회로 인하여 중대한 교통방해가 유발되었는데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에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한 자의 경우, 그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곳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해당할지라도 그 도로를 인근 주민이 대로에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여 왔더라면 당해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25.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사도급계약에서 입찰 참가자격이나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기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 ③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를 몰랐더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